

◆ 政府 施策 ◆

'94 특정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 공고

과학기술처는 '94년도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할 연구사업 및 관련연구개발 과제의 신청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1. 지원사업 및 신청내용

구 분	주요 사업 내용	신청 자격	접 수 처	접 수 기 간
선도기술 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년도 계속추진 사업 - 신의 약·신농약 기술 개발등 10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년 상반기에 상 공자원부, 환경처 관계부처와 공동 공고 예정
국책연구 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년도 계속추진사업 (2개 사업) - CFC대체기술개발 ('90~'94) - 산업용 소형가스터빈 엔진개발 ('91~'95) ※ 계속사업의 세부과제는 신규로 참여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계속사업의 주관 연구기관 <p>※ 계속사업의 신규 세부과제는 기술 개발촉진법 제8조의 3의 대상기관</p>	과학기술 정 책관리연구소 (연구기획 관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년 사업종료 2개월전까지

구 분	주요 사업 내용	신청 자격	접 수 처	접 수 기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년도 신규추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산업기술, 미래복합기술, 적용기술, 공공복지기술, 고속철도기술, 소프트웨어기술등의 분야 - 고온초진도체기술, 2단형 중형과하로켓 개발 분야등 * 연구기획사업 또는 '94년 상반기 연구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과제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3의 대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년 상반기에 별도 공고 예정
출연기관 연구개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관의 고유기능에 부합하는 기술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연) 특성화계획에 따른 주기능 중심으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기처산하 출연 연구기관(단, 원자력분야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서 별도 추진) 	과학기술정책 관리연구소 (연구기획관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년 1월~3월말
연구기획 평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및 연구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업 • 산학연 협동연구회 사업은 1차년도 사업성과에 따라 사업추진방법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3의 대상기관 	과학기술처 (연구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년 1월~12월 • '94년 하반기에 별도공고예정
국제공동 연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의 연구기관, 대학, 기업등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3의 대상기관 	과학기술정책 관리연구소 (연구기획관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년 5월~6월말
출연(연) 보유기술 무상양허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년도 사업 성과에 따라 사업추진 방법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년 상반기에 별도 공고예정
항공우주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 복합재, 항공기 개발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년 상반기에 별도 공고 예정

여섯째는 개발된 제품의 생산지원 및 사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연구소가 장기간 동안 막대한 기술개발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개발한 제품이 제대로 사용되어 보지도 못하고 사장되거나 또는 사용을 외면당하고 있어 기술개발에 대한 회의와 함께 기술개발 투자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향후에는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여 개발된 제품의 효율적 활용과 기업의 기술개발투자 의욕을 고취하고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개발제품의 생산시설설치를 적극 지원해 갈 것이며, 관련규정의 개정등을 통하여 사용의무화도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

특히, 금년에는 개발완료된 제품의 사용을 권장하고 소방법 및 전기사업법의 관련규정의 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지난해 개발이 완료된 배전자동화 설비에 대하여는 금년에 특정지역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해 갈 계획이다

일곱째, 전기공업규격의 표준화 사업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업규격은 정부규격, 한국전력규격, 국제규격등이 혼용 사용되고 있으며 정부규격은 대단히 미흡하고 또 한국전력규격은 각종 국제규격중 가장 엄격한 규격을 선택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전기산업발전에 많은 시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 약화 및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표준규격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 이와 병행하여 각종 배전반의 규격화 사업도 추진해 갈 계획이다.

그외에도 핵심소재 및 부품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 갈 계획이며, 경인지역에 중전기기의 시험설비를 설치하여 수도권에 있는 전기산업체에 대한 시험의 편의를 도모해 나아갈 것이며 검수시험의 절차간소화와 함께 우수제품에 대한 검수시험 면제를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2. 기타 참고사항

- 신청절차, 신청서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과학기술처훈령 제 373호, '93. 8. 5.)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사업별 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는 각 과제별로 13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사업총괄 : 과학기술처 연구기획과 (500-3276, 504-6858)

- 선도기술개발사업

- 국책연구개발사업

- 출연기관연구개발 사업

- 국제공동연구개발 사업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연구기획관리단 (968-429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3 (우)130-650)

- 연구기획평가사업 : 과학기술처 연구관리과 (500-3273, 503-7628)

※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기업이 신청할 경우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융자지원할 예정입니다.

- 문의처 :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 (전화 : 782-7600)

公共機關, 中企제품 구매제도 변경

— 단체적 수의계약 · 制限競争 · 지명경쟁 入札중 선택 —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정부등 공공기관이 구매할 경우 지금까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적 수의계약방법으로만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년 3월부터는 ▲ 단체적 수의 계약 ▲ 중소기업자만의 제한 경쟁 ▲ 지명경쟁입찰중 발주관서가 선택하여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철근 · 콘크리트로 건설된 5층이상의 아파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되고 기타 정부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도 현행보다 2배로 연장된다.

이밖에 지방중소건설업체가 개방에 대비해 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동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1인 이상이 해당지역 소재 건설업체가 되도록 의무화, 오는 9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재무부는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해 '94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關稅減免率 축소

— 財務部, 관세법 개정안에 감면폭 縮小 명시키로 —

정부는 내년 관세율 인하에 따른 관세 收入 감소를 고려해 수입물품에 대한 關稅減免率을 축소키로 했다.

財務部에 따르면 정부는 첨단산업 및 방위산업용 시설재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축소를 관세법개정에 이미 반영했으며 관세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 외국항해 선박 · 항공기 제조용 원료품 ▲ 오염방지 및 폐기물 재활용품등의 관세감면폭 축소를 명시키로 했다.

정부가 확정된 내년 관세감면축소 계획을 분야별로 보면 우선 첨단산업 및 방위산업용 시설재 수입은 감면율이 금년 40%에서 내년에 35%로 줄어든다.

또 오염방지 및 폐기물 재활용품의 관세감면비율은 올해 80%에서 50%로 대폭 축소된다.

외국항해 선박제조용 원료와 항공기용 원료는 현행 감면율이 각각 90% 및 100%이나 내년에 50%로 역시 축소된다.

정부는 95년 이후 이들 3개 분야의 감면지원을 매년 5% 포인트 또는 10% 포인트씩 축소할 계획이며 첨단산업 및 방위산업에 대한 관세감면은 98년에 아예 폐지된다.

방위산업용 원료의 관세감면도 95년 90%, 96년 80%, 97년 70%로 축소된다.

재무부 관계자는 “관세감면 축소에 따라 설비투자 기업의 세부담이 다소 늘어나게 될 것이나 과세 형평을 기하고 특정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이 만성화되는 경향을 바로 잡는다는 新경제 세계개혁에 따라 현행 관세감면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축소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94년 관세감면 운용계획

분 야 별	감 면 율	
	93년	94년
첨단·방위산업용 시설재 및 기초설비품	40%	35%
방위산업원자재	100%	100%
오염방지·폐기물 재활용	80%	50%
외국항해선박·항공기 제조용원료품	선박 90%, 항공기 100%	50%
자동화설비투자	50%	현행 유지
산업재해·직업병예방	80%	
산업기술연구개발용품	80%	
특별법에 의한 감면	50~100%	

※ 특별법에 의한 관세감면은 지하철용품·태양열에너지·농기계·외자도입법에 의한 시설재도입·해외광물개발등임.

임시 投資稅額공제 延長

— 技術開發 준비금에 貿易 · 開發業등 추가 —

기업이 국산 기계설비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는 '臨時投資稅額控除制度'의 적용시한이 94년말 까지 1년간 연장된다.

기업이 기술개발비용에 충당키 위해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매출액의 3~4%까지 損費로 인정받는 '技術人力開發費稅額控除制度'의 적용대상에 △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 개발비가, 적용업종에 △ 무역업 △ 연구 및 개발업이 각각 포함된다.

기업이 투자금액의 10%(외산 3%) 또는 취득가액의 50%(외산 30%)를 일시 상각받을 수 있는 '에너지 節約施設'의 범위에 수도법에 의한 中水道시설이 추가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시행개정안'을 확정하고 '94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세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의무비율이 현행 40%(중소기업 30%)에서 일반기업의 경우 50%, 중소 및 지방소재기업의 경우 30%로 상향조정되며 연간 접대비 지출액이 600만원 이하인 기업의 경우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세금상 損金으로 算入되는 공과금에 폐기물처리부담금,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교통안전기금으로 납부하는 분담금등이 추가된다.

黨政은 또 관세가 無稅인 輸入財貨라고 할 지라도 국내에서 부가세가 과세되는 백신 · 헬리콥터 · 골동품등 54개 세목은 내년 7월 1일부터 부과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또 '94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납세절차를 간소화, △ 기업등이 사업자등록시 제출하는 서류중 임대차 계약서사본의 제출이 면제되고 △ 零稅率 첨부서류중 소관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을 관세사가 발행하는 수출면장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 부가세의 조기환급기일도 2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된다.

中企 정보화 投資 稅額控除혜택 — 技術開發 · 施設투자 稅制지원도 擴大 —

技術開發과 施設投資에 대한 稅制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財務部가 상정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중 租感法시행령 및 附價稅法시행령을 일부 수정키로 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기술개발준비금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현재 ▲ 자체기술개발비 ▲ 연구기관과 공동 및 위탁기술개발비 ▲ 연구원인건비 ▲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비(재무부案)에서 ▲ 설 계업무에 필요한 기자재·장비의 구입 및 설치비용을 새로 포함키로 했다.

기술개발준비금 범위면에서 우대(매출액 4%, 일반업종은 3%)되는 기술집약산업의 범위에 ‘산업 시스템 및 환경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 추가키로 했다.

또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자체 및 위탁기술개발비, 종업원 기술훈련비, 고유상표 및 고유 디자인 개발(재무부案)뿐만 아니라 ‘기술수출을 위한 기술 제안서 작성비용’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해 노동부가 승인하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을 포함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기업의 설비투자촉진을 위해 공해방지시설투자 세액공제대상에 탈황시설을 추가하고 중 소제조업의 정보화 투자에 대해서도 공정개선 및 자동화투자와 같이 투자액의 15%(外産 5%)의 세액 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 國內外 情報 ◆

美, 소형 電氣모터 需要 증대 — 自動車 액세서리용 모터 市場 桴목성장 예상 —

연간수요 77억弗 상당으로 추산되는 미국시장에서의 소형 전기모터(Fractional electricmotors:HS 8501)에 대한 수요는 자동차산업의 발전과 함께 증대하고 있다.